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b>선 람</b>	<b>기 관 의 장</b>

제382호 2013. 9.26 (목요일)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3-49호      금성조선농공단지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 ..... 2
- 하동군 고시 제2013-50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 17
- 하동군 고시 제2013-5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48) ..... 23
- 하동군 고시 제2013-52호      택시운임·요금 조정 고시 ..... 25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3-581호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26
- 하동군 공고 제2013-588호      하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 49
- 하동군 공고 제2013-591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김봉옥, 김태훈) ..... 59
- 하동군 공고 제2013-595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황정주) ..... 60
- 하동군 공고 제2013-604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외 3건 입법예고 ..... 61
- 하동군 공고 제2013-607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배성근) ..... 103

<b>회 람</b>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감사실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고시 제 2013 - 49 호

## 금성조선농공단지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하동군 고시 제 2009-48호(2009.12.7), 제 2010-44호(2010.12.31), 제 2011-34호(2011.8.1), 제 2012-68호(2012.12.27)로 지정 승인된 금성조선농공단지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의2,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고시합니다.

2013년 9월 6일

하 동 군 수

### □ 금성조선농공단지 계획

####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금성 조선농공단지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기자재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조선기자재 생산단지로 육성하고,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을 통해 하동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3.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사유

- 금성조선농공단지 조성사업 민간개발 시행 실시협약 변경으로 인한 개발기간 연장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4.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04-1번지 일원

나. 면 적 : 146,150m<sup>2</sup>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당 초 : 2009. 12. ~ 2014. 12.(5년)

└ 변 경 : 2009. 12. ~ 2016. 2.(6년 2개월)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6.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구분	시행자	주 소	비고
기정	BN금성개발(주) 천학 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7. 토지이용계획 및 변경(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146,150	-	100.0	
산업시설용지	107,970	-	73.9	
지원시설용지	4,680	-	3.2	
공공시설용지	32,800	-	22.4	
도 로	9,970	-	6.8	
주차장	2,360	-	1.6	
공 원	7,760	-	5.3	
완충녹지	12,710	-	8.7	
오수처리시설	700	-	0.5	

( 4 ) 제 382 호

**금성조선농공단지 실시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금성 조선농공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기자재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조선기자재 생산단지로 육성하고,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을 통해 하동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04-1번지 일원
- 면 적 : 146,150m<sup>2</sup>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가. 개발기간

┌ 당 초 : 2009. 12. ~ 2014. 12.(5년)

└ 변 경 : 2009. 12. ~ 2016. 2.(6년 2개월)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1)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BN금성개발(주) 대표이사 천학준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가. 지목별 현황

구 분	계	답	도로	잡	전	제방	기타
필지수	75	33	3	26	8	2	3
면 적(m <sup>2</sup> )	146,150	49,576	3,681	74,039	2,149	4,565	12,140
구성비(%) )	100.0	33.9	2.5	50.7	1.5	3.1	8.3

나. 소유자별 현황

구 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소 계	국 토 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	소 계	하동군	
필지수	75	5	4	1	1	1	69
면적(m <sup>2</sup> )	146,150	19,355	8,101	11,254	1,922	1,922	124,873
구성비(%) )	100.0	13.2	5.5	7.7	1.3	1.3	85.5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146,150	-	100.0	
산업시설용지	107,970	-	73.9	
지원시설용지	4,680	-	3.2	
공공시설용지	32,800	-	22.4	
도 로	9,970	-	6.8	
주차장	2,360	-	1.6	
공 원	7,760	-	5.3	
완충녹지	12,710	-	8.7	
오수처리시설	700	-	0.5	

## 하 동 군 공 보

### ( 6 ) 제 382 호

####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1) 도로계획

##### 가)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합계	3	672	9,970	1	284	3,010	2	388	6,960	-	-	-
중로	2	388	6,960	-	-	-	2	388	6,960	-	-	-
소로	1	284	3,010	1	284	3,010	-	-	-	-	-	-

##### 나)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180	갈사리 202-11 (금성해안도로 (농공단지 내))	금성조선 농공단지 내	일반 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208	중로 2-1호선	금성조선 농공단지 내	일반 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84	갈사리 222-2 (금성해안도로 ( ))	갈사리 909-7 (금성해안도로 ( ))	일반 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하 동 군 공 보

( 7 ) 제 382 호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갈사리 202-18	2,360	-	2,360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18호)	

3)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금성공원	소공원	갈사리 354-11	7,760	-	7,760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4) 녹지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12,710	-	12,710		
기정	1	1호 완충녹지	완충 녹지	갈사리 222-2	7,486	-	7,486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2	2호 완충녹지	완충 녹지	갈사리 202-18	5,224	-	5,224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5) 상수도시설계획 (변경없음)

○ 용수량

구 분	용수수요량(㎡/일)	비 고
계	484.4	계획용수량 : 484.4㎡/일
공 업 용 수	-	
생 활 용 수	484.4	

## 하 동 군 공 보

### ( 8 ) 제 382 호

#### 6) 오·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 오·폐수량

구 분	오·폐수량(m <sup>3</sup> /일)	비 고
계	56.8	계획오수량 : 56.8m <sup>3</sup> /일
산 업 폐 수	1.8	
생 활 오 수	55.0	

#### 7) 에너지 및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 가) 전력

구 분	전력소요예상량(MWh/년)	비 고
계	8,140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 나) 통신

구 분	수요량(회선)	비 고
계	586	(주)KT와 협의하여 공급

### 9. 재원조달계획(변경)

#### 가. 자금조달계획

○ 총 사업비 약 362.4억원 BN금성개발주식회사(SPC)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

####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투자비	362.4	84.4	29	166	68	15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붙임참조

11.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업 종	면 적(m <sup>2</sup> )	구성비(%)
계	-	107,970	100.0
제 조 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1)	107,970	100.0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토지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146,150	-	100.0	
산업시설용지	107,970	-	73.9	실수요자 사용
지원시설용지	4,680	-	3.2	실수요자 사용
공공시설용지	32,800	-	22.4	
도 로	9,970	-	6.8	하동군에 귀속
주차장	2,360	-	1.6	하동군에 귀속
공 원	7,760	-	5.3	하동군에 귀속
완충녹지	12,710	-	8.7	하동군에 귀속
오수처리시설	700	-	0.5	실수요자 자체관리

## 하 동 군 공 보

( 10 ) 제 382 호

### 나. 시설물

구	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계획	비고
도로	중로 2-1 호선	B=15.0m		180.0m		하동군에 귀속	
	중로 2-2 호선	B=15.0m		208.0m		"	
	소로 1-1 호선	B=10.0m		284.0m		"	
	도로 L형 측구			1,237.0m		"	
구조물	보강토 옹벽			83.0m		"	
	L형 옹벽	H=1.5~5.5m		46.0m		"	
우수	우수관로	D450		426.0m		"	
	우수받이	TYPE-A,B		48EA		"	
	우수연결관	D300		267.0m		"	
	우수맨홀	GRP 1호		6개소		"	
	접속T형관	D450X300		30개소		"	
오수	오수관로	D200		79분		"	
	오수맨홀	GRP 1호		11개소		"	
	오수처리장			1개소		실수요자 자체관리	
상수	상수관로	D80		379.0m		하동군에 귀속	
	제수변			10개소		"	
	소화전	지상식소화전		2개소		"	
포장	ASP포장	#78		59.6a		"	
부대	보도용난간	H1.0 X W2.0		66경간		"	
전기	가로등			13분		"	

14.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획관리지역	146,150	-	146,150	100.0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금성지구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산업형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04-1번지 일원	146,150	-	146,150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결정(변경)사유	비고
-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04-1번지 일원	146,150	· 해당없음	

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146,150	-	100.0	
산업시설용지	107,970	-	73.9	
지원시설용지	4,680	-	3.2	
공공시설용지	32,800	-	22.4	
도 로	9,970	-	6.8	
주차장	2,360	-	1.6	
공 원	7,760	-	5.3	
완충녹지	12,710	-	8.7	
오수처리시설	700	-	0.5	

하 동 군 공 보

( 12 ) 제 382 호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672	9,970	1	284	3,010	2	388	6,960	-	-	-
중로	2	388	6,960	-	-	-	2	388	6,960	-	-	-
소로	1	284	3,010	1	284	3,010	-	-	-	-	-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180	갈사리 202-11 (금성해안도로)	금성조선 농공단지 내	일반 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208	중로 2-1호선	금성조선 농공단지 내	일반 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84	갈사리 222-2 (금성해안도로)	갈사리 909-7 (금성해안도로)	일반 도로	-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나)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갈사리 202-18	2,360	-	2,360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하 동 군 공 보

( 13 ) 제 382 호

다) 공원 결정(변경)조서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금성공원	소공원	갈사리 354-11	7,760	-	7,760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금성공원	7,760㎡	· 해당없음

라)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완충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12,710	-	12,710	-	
기정	1	1호 완충녹지	완충 녹지	갈사리 222-2	7,486	-	7,486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기정	2	2호 완충녹지	완충 녹지	갈사리 202-18	5,224	-	5,224	2009.12.7 (하동군고시 제2009-48호)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합계		113,350			113,350	
-	1BL	113,350	1BL-1	갈사리 204-1	77,320	산업시설용지
			1BL-2	갈 사 리 202-18	7,180	
			1BL-3	갈사리 202-1	5,470	
			1BL-4	갈사리 221-1	18,000	
			1BL-5	갈사리 204-6	4,680	지원시설용지
			1BL-6	갈 사 리 204-13	700	오수처리시설

## 하 동 군 공 보

( 14 ) 제 382 호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1BL - 1 1BL - 2 1BL - 3 1BL - 4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가'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카'호 및 '타'호의 공장, '파'호의 창고시설</li> </ul> </li> <li>•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산업분류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li> </ul> </li> </ul>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	1BL - 5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가'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li> <li>-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나'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li> <li>-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28조 19호 [별표19] 중 '다'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li> </ul> </li> <li>•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li> </ul> </li> </ul>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	1BL - 6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li> </ul> </li> </ul>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하 동 군 공 보

( 15 ) 제 382 호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제어 요소	적용구간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	공공 보행통로	산업시설용지내 (중로2-2호선 ~완충녹지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며, 보행동선의 연속성 및 안전성을 확보토록 계획함</li> <li>• 공공보행통로 폭 : 3m이상</li> </ul>	

라.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가) 총괄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공원면적	7,760	-	7,760	
시설면적계	998	-	998	시설율 : 12.9%
건축 면적	바닥면적	-	-	
	연면적	-	-	

나)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760	-	7,760	
도로 및 광장	998	-	998	
녹 지	6,762	-	6,762	녹지율 : 87.1%

2) 세부시설조서

가) 도로 및 광장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998	-	-	-	
기정	1	도로	-	743	-	-	-	
기정	2	중앙광장	-	117	-	-	-	
기정	3	휴게광장	-	138	-	-	-	

하 동 군 공 보

( 16 ) 제 382 호

나) 녹지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규모(m <sup>2</sup> )		규 모	비 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6,762	6,762	-	-	-	
변경	-	녹지	-	6,762	6,762	-	-	-	

3) 도로조서 총괄표

구 분		합 계		중 로		소 로	
		연장(m)	면적(m <sup>2</sup> )	연장(m)	면적(m <sup>2</sup> )	연장(m)	면적(m <sup>2</sup> )
합 계		417	743	-	-	417	743
소 로	1류	기정	-	-	-	-	-
	2류	기정	-	-	-	-	-
	3류	기정	417	743	-	-	417

4) 세부도로조서

가) 소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m)	면적 (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417	743	-			
기정	소로	3	1	3.0	32	106	진입로	서측경계	동측경계	
기정	소로	3	2	3.0	68	222	연결로	소로3-1	중앙광장	
기정	소로	3	3	3.0	18	60	연결로	중앙광장	소로3-7	
기정	소로	3	4	2.0	31	69	산책로	소로3-2	소로3-5	
기정	소로	3	5	2.0	16	29	산책로	소로3-4	휴게광장	
기정	소로	3	6	2.0	13	25	산책로	휴게광장	소로3-1	
기정	소로	3	7	1.5	124	54	산책로	소로3-2	소로3-1	
기정	소로	3	8	1.5	115	178	진입로	서측경계	남측경계	



하동군 고시 제2013 - 50호

##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및 동법 35조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낙시어선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9. 11.

### 하 동 군 수

#### 1. 영업시간의 제한

- 가. 레이더 설치 낙시어선 : 22:00부터 익일 03:00까지
- 나. 선외기 또는 레이더 미설치 낙시어선의 영업제한
  -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기상청 발표기준)

#### 2. 소형낙시어선의 기준

- 3톤 미만의 선외기를 설치한 어선 및 총톤수 3톤 미만의 낙시어선

#### 3. 영업구역의 제한

- 가. 군사 및 국가기간산업 보호 상 규제되어 있는 해역
- 나. 무인도서 중 갯바위(간출암) 반경 50m이내 해역
- 다. 선외기 설치 및 레이더 미설치 낙시어선은 하동군 선착장에서 3마일 이내

#### 4. 낙시어선업 안전운항조치 및 인명안전에 관한 장비착용

- 가. 기상특보 발효 시 및 기상불량 시 : 출항금지
- 나. 안전운항 위험시 : 출항제한
- 다. 승선자(승객, 선원)은 반드시 구명동의 착용

## 하 동 군 공 보

( 18 ) 제 382 호

### 5. 승객의 안전을 위한 영업제한

-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상에 잡종선(목재류, 합성수지류 등)을 부설하고 그 구조물의 상판에 승객을 하선시켜 영업하는 행위

### 6. 승객 및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 가. 승객 준수사항

1) 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산자원보호, 수질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2) 낚시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나) 낚시어선업자(선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운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다)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라)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마)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취사, 양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바)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사)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하는 행위

4)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

5) 승객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및 취사를 자제합니다.

6)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 기간 및 금지체장을 준수하고 포획·채취 시는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7)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회수하여야 합니다.

#### 나. 낚시어선업자의 의무사항

1) 낚시어선업자는 [별표1]에서 정한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낚시어선에 승객이 승선할 경우 승객의 준수사항과 대피명령을 할 경우 이에 즉각 응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2)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때에는 승객과 상호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발생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승객과 상호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장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출입항 신고 시 낚시지점별 하선인원을 신고하여 승객의 위치를 알려야한다.

3)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을 승선시켜 다른 시군의 관할구역에 안내한 때에는 해당 구역에 대하여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명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에 신고 조치하여야 한다.

5)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지급하여야 하며, 선내에 이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비치하여야 한다.

6)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는 반드시 수거식 간이 변기 비치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

7)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및 승객이 준수 하여야 하는 사항』을 [별표2]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8)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및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 칙

①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변경고시(하동군 고시 제2007-297호)는 폐지한다.

③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득한 어선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준하여 낚시어선업 신고를 득한 것으로 하며, 이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1]

## 낙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낙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 1. 구명설비

- 가) 승선인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중 20%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최대승선인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 다) 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 2. 소화 설비

- 가) 총톤수 5톤 미만 낙시어선의 경우 :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 나) 총톤수 5톤 이상 낙시어선의 경우 :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 3. 전기 설비 : 낙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 설비

### 4. 그 밖의 설비

-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 나)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 다) 핸드레일
- 라) 비상용 구급약품 세트
- 마) 자기점화등 1개 이상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설비 중 낙시어선업신고 전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2]

## 납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납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 1. 게시판의 제작 기준

가. 재질 :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나. 색상

○ 글씨 : 검은색

○ 바탕 : 납시어선업 신고 확인증 - 흰색/ 승객 준수사항은 - 노란색

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 게시판의 부착 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래의 <예시> 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 2. 게시 장소

해당 납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 승선정원 명

## 승객준수사항

1. 낚시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 시 안전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낚시어선업 신고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낚시승객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 휴대폰 등 연락처를 낚시어선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야영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3. 낚시승객은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②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③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④ 낚시어선업자(선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⑤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 ⑥ 낚시제한기준(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 1,2)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 ⑦ 낚시어선 내 및 낚시장소에서 쓰레기를 바다에 무단투기 하는 행위
  - ⑧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 ⑨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하는 행위
4.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대피 요청 시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하동군 고시 제2013 - 51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48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9. 12.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637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하 동 군 공 보

( 24 ) 제 382 호

###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4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48	20070618	우리지역의 중심지를 통과하는 간선도로로 중앙도로명 표시원칙 적용 도로명 부여	직권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71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맥전길 55	20070618	맥전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637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괴목길 11-32	20070618	괴목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산29-13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금정길 73-16	20080402	금정이라는 지명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657-3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047	20090302	진교면과 양보면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진교면의 "진"과 양보면의 "양"으로 도로의 진행방향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112-1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3길 19-8	20090302	광평리에 있는 소나무 군락지의 지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세번째 도로명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장2길 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장2길 7-1	20090302	시장이라는 지역 특성에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직권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6-8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220	20090710	2번 국도의 일부로서,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신청



하동군 고시 제2013- 52 호

## 택시운임요금 조정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신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7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택시)요금이 다음과 같이 조정 되었음을 고시 합니다.

2013. 9. 17

### 하 동 군 수

◆ 다 음 ◆

1. 시 행 일 : 2013. 10. 1 (화) 00:00부터 시행
2. 적용지역 : 하동군 전 지역
3. 택시요금 요율조정 내역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기본단위	금 액	기본단위	금 액	
기 본 운 임	2km	3,000원	2km	4,000원	복합할증적용 기본요금
거 리 운 임	143m당	100원	143m당	100원	
시 간 운 임	34초당	100원	34초당	100원	15km/h이하 주행 시
호 출 료	1,000원		-		
심 야 운 행	20% 할증		20% 할증		00:00 ~ 04:00 시간대
시 계 외 운 행	20% 할증		20% 할증		사업구역 외 운행
택시요금제도	미터기요금		미터기요금		
복합할증을	50%		50%		

하동군 공고 제 581호

##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9월 10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2. 제안 이유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제)정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공익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정비 (안 제8조 ~ 제9조)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법적근거 신설에 따라 기존 협의회의 구성 운영관련 조항을 신설된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개정
    - ※ (현행) 10인이내⇒(개정) 9인이내 해촉근거 제시 운영방법 명시

나.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요건 강화(안 제13조)

- 대규모 점포등의 변경등록 범위 확대

(현행) 소재지 변경 ⇒ (개정)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의무화

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함 (안 제3조의2)

- 농수산물 매출비중 51% 초과시 ⇒ (개정) 55%로 상향

- 영업시간 제한 : (현행) 오전8시 ~ 오전8시 ⇒ (개정) 오전8시 ~ 오전10시

- 의무휴업일 : (현행) 매월1 ~ 2일 ⇒ (개정) 매월 이틀 공휴일

※ 단,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

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안제16조)

-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그 운영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른다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30일까지 하동군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경남 하동군 군청로 23 하동군청 경제수산과

- 전화번호 : 055-880-2194 (FAX:055-880-219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하동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취지

- 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을 동 법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 나. 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준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하며,
- 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중소유통업과 전통 시장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 구성 등 정비 (안 제8조 ~ 제9조)

- 유통업상생발전협회 설치 법적근거 신설에 따라 기존 협회의 구성 운영관련 조항을 신설된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개정

※ 규칙 : (현행) 10인이내 ⇒ **(개정)** 9인이내, 해촉근거 제시, 운영방법 명시

### 나.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요건 강화(안 제13조)

- 대규모 점포등의 변경등록 범위 확대

(현행) 소재지 변경 ⇒ **(개정)**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 첨부 의무화

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함 (안 제13조의2)

- 농수산물 매출비중 51% 초과시 ⇒ (개정) 55%로 상향
  - 영업시간 제한 : (현행) 오전0시 ~ 오전8시 ⇒ (개정) 오전0시 ~ 오전10시
  - 의무휴업일 : (현행) 매월1 ~ 2일 ⇒ (개정) 매월 이틀 공휴일
- ※ 단,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

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안제16조)

-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그 운영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른다

마. 그 밖의 관련 법조항 변경에 따른 적용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제8조, 제12조의2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나. 예산조치사항 및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 (3)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 (4) 입법예고 : 2013. 9. 10 ~ 9. 30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 제4항”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2”를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로 한다.

제6조 제3항 전단 중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간”으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를 “대형유통기업의 대표”으로 하며, 2호 중 “전통시장, 슈퍼마켓”을 “군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으로 하고, 5호 중 “경제업무 담당과장”을 “유통업무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6호 중 “그 밖의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로 한다.

## 하 동 군 공 보

( 32 ) 제 382 호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를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같은 조 제7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8항 중 “시장업무”를 “유통산업업무”로 한다.

같은 조 제9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중 “중소유통기업”을 “지역중소유통기업”으로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3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4호까지에서 규정 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3조제1항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 이라 한다)를” 를 “대규모점포등을”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중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13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것과”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로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로, “명하고,”를 “명하거나”로,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1퍼센트”를 “55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 일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 제2항에서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등과 주변 중소기업 그리고 주변상인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호의 “이해당사자의 합의”란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의견수렴등을 거쳐 협의회에서 의결된 경우 이를 합의로 본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그 운영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한상공회의소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의 의장이 된다.

⑥ 군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산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을 “제17조(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u>준대규모점포</u>”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p> <p>4. ~ 8.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준대규모점포</u>”란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 제 4 호----- -----</p> <p>4. ~ 8. (현행과 같음)</p>
<p>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1. 군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③ -----  
-----  
-----  
-----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  
-----  
-----.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간-----  
-----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②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특정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  
-----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기업 점포의 대표

3.~ 4. (생략)

5. 군 공무원 중 경제업무 담당과장

6. 그 밖의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생략)

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군수는 협의회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군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3.~ 4. (현행과 같음)

5. ----- 유통업무 부서의 과장

6.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④ 임명된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⑧ 협의회를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⑨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⑩ (생 략)

제9조(협회의 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⑧ -----  
----- 유통산업  
업무-----.

⑨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현행과 같음)

제9조(협회의 기능) -----  
----- 지역중소유통  
기업-----  
-----  
-----.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관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1.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  
-----

2. 제13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4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하 동 군 공 보

( 40 ) 제 382 호

6.~9.(생 략)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2.(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삭 제

제13조 ①

\_\_\_\_\_

\_\_\_\_\_ 대규모점포등을 \_\_\_\_\_

\_\_\_\_\_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_\_\_\_\_

\_\_\_\_\_

\_\_\_\_\_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2.(현행과 같음)

3.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다.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로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

----- 명하거나 -----  
 -----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 55퍼센트 -----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 일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군수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등과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 설>

⑤ 군수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제2호의 “이해당사자의 합의”란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협의회에서 의결된 경우 이를 합의로 본다.

<신 설>

제1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그 운영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신 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신 설>

2.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신 설>

3. 소비자단체의 대표

<신 설>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5. 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신 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⑥ 군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산업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  
-----.

**관 련 법 명**

○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법률11690호, 시행 2013.4.24)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군수·군수·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군수·군수·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특별자치군수·군수·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군수·군수·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특별자치군수·군수·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특별자치군수·군수·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군수·군수·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하 동 군 공 보

( 46 ) 제 382 호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2>

② 회장은 부군수(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군수를 말한다)·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군수·군수·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군수·군수·군수·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3(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군수·군수·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3 - 588 호

## 하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 2. 제정 이유

- 하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으로 국민 알권리 증진과 행정 투명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행정업무 촉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1 .10. 17.) 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지침 하달 (2011. 11. 7.)

#### 3. 주요 골자

-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 정보공개원칙과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제4조)
- 공개대상 기관의 의무 규정(제5조)
- 정보의 체계적인 분류·목록 작성·비치, 정보공개창구 설치 등
- 정보공개책임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정보공개총괄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등 책임부여

## 하 동 군 공 보

( 50 ) 제 382 호

-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에 대한 규정(안 제7조)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
-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에 대한 규정(안 제8조)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 정보의 공개방법을 정함(안 제9조)
  - 열람·시청,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 방법으로 우편, 팩스전송,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공개
  -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정기 또는 수시 공표정보는 인터넷 통해 공개
-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정보공개 소요비용은 청구인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7조)
  - 심의회 설치(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처리)
  - 심의회 구성(총 7명 : 위촉직 4명, 당연직 3명)
  - 회의운영(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등 내용)
  -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대상 및 해촉 대상 규정

### 4. 의견 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0월 1일까지 하동군 (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65, FAX 055-880-2159, e-mail : [beeney@korea.kr](mailto:beeney@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전송, 직접방문 등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서·도면 등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공개대상기관”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에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① 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정보공개 책임관을 둔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2.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
3. 공개대상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및 지원

4. 정보공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5.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6.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관리 지원

**제7조(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 계획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요한 기본계획에 관한 정보
2. 군 및 출자·출연기관의 업무계획과 예산·결산·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4.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5. 식품, 위생, 환경, 의료, 교통 등 군민의 일상생활 편의와 관련된 분야의 정보
6. 군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7. 군에서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교량 등 안전점검결과
8.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9.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

계약 사항

10. 군정과 관련하여 군이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

11.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군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

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제7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하동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②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 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촉직 4명(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과 당연직 3명(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심의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회 개최 사유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견청취 및 수당)**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 하 동 군 공 보

( 58 ) 제 382 호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의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용하는 하동군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하동군정보공개심의회로 본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공고 제2013-591호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획허가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3. 9. 12

### 하 동 군 수

####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

- 포 획 목 적 : 유해야생동물 구제
- 포 획 기 간 : 2013. 09. 23 ~ 2013. 10. 30
- 허 가 내 역

허가지역	허가자 (포획자)	포획 방법	포획기간	포획동물 및 수량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일원	김봉옥	총렵 (자력)	2013. 09. 23 ~ 2013. 10. 30	허가기간 내 멧돼지 10마리 이내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일원	김태훈	총렵 (자력)	2013. 09. 23 ~ 2013. 10. 30	허가기간 내 멧돼지, 고라니 각 5마리 이내

#### ○ 포획제외지역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및 동법 제55조(수렵의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안전수칙)에 해당하는 지역 및 장소
- 군수가 정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장소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공고 제2013-595호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획허가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3. 9. 13

### 하 동 군 수

####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

- 포획 목적 : 유해야생동물 구제
- 포획 기간 : 2013. 09. 23 ~ 2013. 10. 30
- 허가 내역

허가지역	허가자 (포획자)	포획 방법	포획기간	포획동물 및 수량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일원	황정주	총렵 (자력)	2013. 09. 23 ~ 2013. 10. 30	허가기간 내 비둘기 50마리, 꿩 20마리, 고라니 5마리

#### ○ 포획제외지역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및 동법 제55조(수렵의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안전수칙)에 해당하는 지역 및 장소
- 군수가 정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장소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9.  
제 출 자 : 하동군수

## 1. 개정이유

- 힐링시티의 선점을 통한 정체성 확보 및 관련사업 확산 도모
- 부서간 업무총괄 및 조정 역할 강화로 미래 수요확대에 대한 힐링사업 체계적인 추진
- 슬로시티 정신의 전군적 파급으로 2014년 재인증 등 국내 대표슬로시티로의 위상 각인

## 2. 주요내용

- 슬로시티 관련 분장사무 조정(안 제3조 제2항)
  - 문화관광과(슬로시티담당)→기획감사실(슬로시티담당)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나. 관련법규 등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사목 “슬로시티 및 힐링시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나목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통상교류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건설교통과, 녹색환경과를 둔다.</p> <p>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기획감사실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나.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군정·비위 감사 및 법무·소송·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 라.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마. &lt;삭제&gt; 바. &lt;삭제&gt;</p> <p>2. ~ 4. &lt;생략&gt;</p> <p>5. 문화관광과 가. 문화예술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나. 슬로시티에 관한 사항 다. 관광진흥에 관한사항 라. 녹색관광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마.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6. ~ 13. &lt;생략&gt;</p>	<p>3조(실·과의 설치) ① &lt;현행과 같음&gt;</p> <p>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기획감사실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나.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군정·비위 감사 및 법무·소송·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 라.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마. &lt;삭제&gt; 바. &lt;삭제&gt; 사. 슬로 및 힐링시티에 관한 사항</p> <p>5. 문화관광과 가. 문화예술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나. &lt;삭제&gt; 다. 관광진흥에 관한사항 라. 녹색관광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마.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6. ~ 13. &lt;현행과 같음&gt;</p>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9.  
제 출 자 : 하동군수

### 1. 개정이유

- 힐링시티의 선점을 통한 정체성 확보 및 관련사업 확산 도모
- 부서간 업무총괄 및 조정 역할 강화로 미래 수요확대에 대한 힐링사업 체계적인 추진
- 슬로시티 정신의 전군적 파급으로 2014년 재인증 등 국내 대표슬로시티로의 위상 각인

### 2. 주요내용

- 슬로시티 업무 관련 실과소장의 사무분장 조정(안 제4조)
  - 문화관광과장→기획감사실장
  - 기존 최참판댁 운영 및 관리 사무는 문화관광과장의 사무로 존치
  - 기획감사실장에게 힐링시티 업무 추가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나. 관련법규 등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 66 ) 제 382 호

[별표 1]

하동군 본청 실·과·소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기획감사 실장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통제
	2 실소관 업무의 기획 조정
	3 중장기 계획 및 조정
	4 군정업무 주요업무 확인평가
	5 군수공약 사항 및 지시사항 총괄관리
	6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상 시상
	7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관리 운영
	9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10 외국인 등록
	11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
	12 군민제안
	13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나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생략
	다 군정·비위 감사 및 법무·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생략
	라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1 홍보 계획 수립
	2 군정홍보 및 보도
	3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 및 편찬
	4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
	5 전시 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마 슬로 및 힐링시티에 관한 사항
	1 슬로시티 업무 전반
	2 힐링시티 업무 전반

실과명	분장사무
문화관광 과장	<b>가 문화예술 및 문화제에 관한 사항</b>
	1 지방문화예술 진흥
	2 문화예술분야 지도 육성 및 관리
	3 문화원 운영 지도 감독
	생략
	<b>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b>
	1 관광진흥 계획수립·조정
	2 관광진흥 개발기금의 관리운영
	3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 수립 추진
	4 관광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등록·관리
	5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
	6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7 동·남부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8 기타 관광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9 관광시설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b>다 녹색관광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b>
	1 녹색관광 홍보 종합계획 수립·조정
	2 관광객 유치 및 관광안내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관리
	4 야생차문화축제 업무 추진
	5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
	6 관광마케팅 시책업무 추진
	7 관광상품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8 공동브랜드 관리
	9 이순신 프로젝트사업 전반
	<b>라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b>
	1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3 화개장터 운영 및 관리(문전성시 사업 포함)
	4 삼성궁 및 천제당 운영 및 관리
	5 지리산역사관 운영 및 관리
	6 최 참관택 운영 및 관리

## 하 동 군 공 보

( 68 ) 제 382 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하동군 본청 실·과·소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하동군 본청 실·과·소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성과 명	분장사무	성과 명	분장사무
기획 감사 실장	가	가	가
	1	1	1
	2	2	2
	3	3	3
	4	4	4
	5	5	5
	6	6	6
	7	7	7
	8	8	8
	9	9	9
	10	10	10
	11	11	11
	12	12	12
	13	13	13
	나	나	나
	다	다	다
	라	라	라
	1	1	1
	2	2	2
	3	3	3
	4	4	4
	5	5	5
	마	마	마
	1	1	1
	2	2	2

현		개	
행		정	
안		안	
문화 관광 과장	<b>실과명</b>	<b>실과명</b>	<b>실과명</b>
	<b>분장사무</b>	<b>분장사무</b>	<b>분장사무</b>
	가 문화예술 및 문화제에 관한 사항	가 문화예술 및 문화제에 관한 사항	가 문화예술 및 문화제에 관한 사항
	1 지방문화예술 진흥	1 지방문화예술 진흥	1 지방문화예술 진흥
	생략	생략	생략
	나 슬로시티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1 슬로시티 업무 전반	1 관광진흥 계획수립·조정	1 관광진흥 계획수립·조정
	2 최 참판댁 운영 및 관리	2 관광진흥 개발기금의 관리운영	2 관광진흥 개발기금의 관리운영
	3 토지배경지 복원사업	3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 수립 추진	3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 수립 추진
	다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4 관광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등록·관리	4 관광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등록·관리
	1 관광진흥 계획수립·조정	5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	5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
	2 관광진흥 개발기금의 관리운영	6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6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3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 수립 추진	7 동·남부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7 동·남부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4 관광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등록·관리	8 기타 관광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광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5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	9 관광시설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9 관광시설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다 녹색관광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다 녹색관광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7 동·남부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1 녹색관광 홍보 종합계획 수립·조정	1 녹색관광 홍보 종합계획 수립·조정
	8 기타 관광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 및 관광안내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 및 관광안내에 관한 사항
	9 관광시설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관리	3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관리
	라 녹색관광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생차문화축제 업무 추진	4 야생차문화축제 업무 추진
	1 녹색관광 홍보 종합계획 수립·조정	5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	5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
	2 관광객 유치 및 관광안내에 관한 사항	6 관광마케팅 시책업무 추진	6 관광마케팅 시책업무 추진
	3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관리	7 관광상품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7 관광상품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4 야생차문화축제 업무 추진	8 공동브랜드 관리	8 공동브랜드 관리
	5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	9 이순신 프로젝트사업 전반	9 이순신 프로젝트사업 전반
	6 관광마케팅 시책업무 추진	라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관광상품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1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8 공동브랜드 관리	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9 이순신 프로젝트사업 전반	3 화개장터 운영 및 관리(문전성시 사업 포함)	3 화개장터 운영 및 관리(문전성시 사업 포함)	
마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삼성궁 및 천제당 운영 및 관리	4 삼성궁 및 천제당 운영 및 관리	
1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5 지리산역사관 운영 및 관리	5 지리산역사관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6 최 참판댁 운영 및 관리	6 최 참판댁 운영 및 관리	
3 화개장터 운영 및 관리(문전성시 사업 포함)			
4 삼성궁 및 천제당 운영 및 관리			
5 지리산역사관 운영 및 관리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9. .  
제 출 자 : 하 동 군 수

### 1. 개정이유

- 지적재조사 및 2014년도 사회복지 인력 순증분(2명) 정원반영
-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1명)에 따른 정원 조정

### 2. 주요내용

- 군의 정원 총수를 617명(증 2명)으로 조정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602명→604명(증 2명)
-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의 별표3)
  - 일반직 6급이하 483명(증 3명)
  - 기능직                    65명(감 1명)

###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등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적재조사사업 총액인건비 증액 경남도 공문」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 통보(경상남도)」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하동군 규칙 제 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본문 중 “615명”을 “61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02명”을 “604명”으로 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본문 중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 72 ) 제 382 호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농 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b>617</b>	-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b>521</b>	-						
4급	1	1						
4~5급	3	2			1			
5급·지도관	34	12	2	4	1	2	1	12
6급 이하 계	<b>483</b>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1	1					
연구직 계	2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3	-		-				
지도사	25	-						
기능직 계	<b>65</b>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1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617</u> 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0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u>604</u> 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농기술센터	업터	보건소							농기술센터	업터	보건소			
총 계	615			-						617			-					
정무직 계	1	1								1	1							
군수	1	1								1	1							
일반직 계	518			-						521			-					
4급	1	1								1	1							
4~5급	3	2				1				3	2				1			
5급·지도관	34	12	2	4	1	2	1	12		34	12	2	4	1	2	1	12	
6급 이하 계	480			-						483			-					
별정직 계	3			-						3			-					
5급 상당	1		1							1		1						
6급 상당	2	1	1							2	1	1						
연구직 계	2									2								
연구사	2	-								2	-							
지도직 계	25			-						25			-					
지도관	3	-								3	-							
지도사	25			-						25			-					
기능직 계	66			-						65			-					

## 하 동 군 공 보

( 74 ) 제 382 호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6. <생략>

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13. <생략>

④ ~ ⑥ <생략>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퇴직한 공무원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할 때에는 그 퇴직 전의 재직기관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2.~ 5. <생략>

6.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8급 이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임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7. ~ 12. <생략>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경력직 지방공무원 또는 경력직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아래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이하 "승진소요 최저연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에 합산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1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에서의 근무경력,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59조·제90조와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생략>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는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 동 군 공 보

( 78 ) 제 382 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26조(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일반직 9급 지방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8급과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9급 지방공무원을 8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8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2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2. 기능직지방공무원의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

3. 소방공무원의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하 동 군 공 보

( 80 ) 제 382 호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9. .  
제 출 자 : 하동군수

## 1. 개정이유

- 지적재조사 및 2014년도 사회복지 인력 순증분(2명) 정원반영
-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1명)에 따른 정원 조정
- 슬로시티담당 부서 조정에 따른 정원 재배치

## 2.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안 제2조의 별표2)
  - 주민복지실 : 일반직 9급 사회복지 1명(24명→25명)
  - 민 원 과 : 일반직 9급 행정·시설(지적) 1명(16명→17명)
  - 의회사무과 : 일반직 8급 행정 1명  
기능직 8급 사무 ▽1명
-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의 직렬별 정원 배정 조정(안 제3조)
  - 기획감사실 : 일반직 6급 행정·세무 1명  
일반직 7급 행정·농업·시설 1명
  - 문화관광과 : 일반직 6급 행정·세무 ▽1명  
일반직 7급 행정·농업·시설 ▽1명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등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 82 ) 제 382 호

하동군 규칙 제 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좌·보조기관의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총 계		617(2)	261(2)	68	49	9	23	13	21	174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 반 직	일반직 계	521(3)	239(2)	66	21	9	8	7(1)	16	155
	4급 소계	1	1							
	서기관	1	1							
	4~5급소계	3	2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사회복지 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3	2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농업	6	1							5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시설	5	4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농지	3	1							2
	행정·농업·수의·(지도)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농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농업·지도관	2			2					

## 하 동 군 공 보

( 84 ) 제 382 호

구 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8급 소계	<b>130(1)</b>	54	33	1	2		<b>2(1)</b>	3	35
	행정	<b>15(1)</b>	11					<b>2(1)</b>		2
	세무	1	1							
	사회복지	7	1						1	5
	공업	1			1					
	공업(무대.음향)	0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4		4						
	식품위생	2		2						
	환경	1	1							
	시설	9	5							4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전산	4	4							
	행정·농업	11	4							7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보건	0								
	행정·시설	6	5				1			
	세무·환경	0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2	2							
	녹지·시설	0								
	행정·보건·간호	4		4						
	보건·환경	0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전산	0								
	행정·세무·농업	8	1							7
	행정·농업·농촌지도사	0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행정·환경·시설										
세무·공업·시설										
보건·간호·의료	2		2							

하 동 군 공 보

( 85 ) 제 382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 반 직	9급 소계		46(2)	24(2)	2	2	1	1	0	1	15
	행정		3	2				1			
	전산										
	사회복지		7(1)	4(1)							3
	환경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8	2						1	5
	행정·전산										
	행정·농업		4	2							2
	행정·시설		10(1)	9(1)			1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시설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하 동 군 공 보

( 86 ) 제 382 호

구 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기 능 직	기능직 계	65(▽1)	18	2	3	0	15	4(▽1)	5	18	
	6급 소계	7	2					2	2	1	
	사무	3						1	1	1	
	운전	4	2					1	1		
	7급 소계	23	5	2	1		2	2	3	7	
	운전	11	3	2					2	4	
	사무	6			1		1	2		2	
	전화상담	1								1	
	기계	1					1				
	전기	1	1								
	통신	1							1		
	선박항해	1	1								
	8급 소계	18(▽1)	8		2				0(▽1)		8
	열관리	1	1								
	선박기관	1	1								
	운전	9	2		1						6
	조무	3	3								
	방호	1			1						
	사무	3(▽1)	1						0(▽1)		2
	9급 소계	18	3					13			2
	전화상담										
	기계	3						3			
	열관리·기계										
	운전	3	1								2
	사무										
	조무										
	선박	1	1								
	방호										
전기	3	1					2				
전기·통신											
화공	4						4				
보건	4						4				

신·구조 대문비표

현											개정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총 계			615	259	68	49	9	23	13	21	174	총 계			617(2)	261(2)	68	49	9	23	13	21	174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정무직		1	1									
일반직	일반직 계		518	237	66	21	9	8	6	16	155	일반직	일반직 계		521(3)	239(2)	66	21	9	8	6	17(1)	155		
	4급 소계		1	1									4급 소계		1	1									
	서기관		1	1									서기관		1	1									
	4-5급소계		3	2	1								4-5급소계		3	2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사회복지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사회복지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의료기술 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의료기술 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3	2						1			행정		3	2							1		
	의무		1		1								의무		1		1								
	시설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농업		6	1									행정·농업		6	1									5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시설		5	4			1						행정·시설		5	4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3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수의(지도)		1			1							행정·농업·수의(지도)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녹지		1										행정·사회복지·농업· 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 수산		1										행정·농업·시설·해양 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1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농업·지도관		2			2							농업·지도관		2				2						

## 하 동 군 공 보

( 88 ) 제 382 호

현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 반 직	8급 소계		129	54	33	1	2		1			3	35	8급 소계		130(1)	54	33	1	2		2(1)		3	35		
	행정		14	11					1				2	행정		15(1)	11					2(1)			2		
	세무		1	1										세무		1	1										
	사회복지		7	1									1	5	사회복지		7	1						1	5		
	공업		1			1								공업		1			1								
	공업(무대·음향)		0											공업(무대·음향)		0											
	해양수산		1	1										2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10	보건		10		10								
	간호		1		1									1	간호		1		1								
	의료기술		9		9									9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4		4									4	보건진료		4		4								
	식품위생		2		2									2	식품위생		2		2								
	환경		1	1										1	환경		1	1									
	시설		9	5										4	시설		9	5								4	
	행정·세무		3	3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전산		4	4											행정·전산		4	4									
	행정·농업		11	4									7	행정·농업		11	4								7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보건		0												행정·보건		0										
	행정·시설		6	5			1								행정·시설		6	5			1						
	세무·환경		0												세무·환경		0										
	전산·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2	2											공업·환경		2	2									
	농업·농지		2	2											농업·농지		2	2									
	농지·시설		0												농지·시설		0										
	행정·보건·간호		4		4										행정·보건·간호		4		4								
	보건·환경		0												보건·환경		0										
	약무·보건		1		1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전산		0												행정·세무·전산		0										
	행정·세무·농업		8	1									7	행정·세무·농업		8	1								7		
	행정·농업·농촌지도사		0												행정·농업·농촌지도사		0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행정·공업·시설		5	4				1						
행정·환경·시설													행정·환경·시설														
세무·공업·시설													세무·공업·시설														
보건·간호·의료		2		2										보건·간호·의료		2		2									



# 하 동 군 공 보

( 89 ) 제 382 호

현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음	면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음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 반 직	9급 소계		44	22	2	2	1	1	0			1	15			<del>46(2)</del>	<del>24(2)</del>	2	2	1	1	0		1	15	
	행정		3	2				1								3	2				1					
	전산																									
	사회복지		6	3									3			<del>7(1)</del>	<del>4(1)</del>								3	
	환경		1	1												1	1									
	행정·세무		1	1												1	1									
	행정·사회복지		8	2									1	5		8	2							1	5	
	행정·전산																									
	행정·농업		4	2										2		4	2									2
	행정·시설		9	8				1								<del>10(1)</del>	<del>9(1)</del>				1					
	농업·복지		1	1												1	1									
	농업·수의		2				2									2			2							
	보건·간호		1			1										1		1								
	행정·세무·농업		1													1										1
	행정·세무·시설		1	1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1
	행정·농업·복지		3	1										2		3	1									2
	행정·농업·시설																									
	행정·환경·시설		1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1		1								

## 하 동 군 공 보

( 90 ) 제 382 호

현											개 정 안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음	면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음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0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0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기능직	기능직 계	66	18	2	3	0	15	5	5	18	기능직 계	65(▽1)	18	2	3	0	15	4(▽1)	5	18			
	6급 소계	7	2					2	2	1	6급 소계	7	2					2	2	1			
	사무	3						1	1	1	사무	3						1	1	1			
	운전	4	2					1	1		운전	4	2					1	1				
	7급 소계	23	5	2	1		2	2	3	7	7급 소계	23	5	2	1		2	2	3	7			
	운전	11	3	2						4	운전	11	3	2						4			
	사무	6			1		1	2		2	사무	6				1	1	2		2			
	전화상담	1								1	전화상담	1									1		
	기계	1					1				기계	1					1						
	전기	1	1								전기	1	1										
	통신	1								1	통신	1								1			
	선박항해	1	1								선박항해	1	1										
	8급 소계	19	8		2			1		8	8급 소계	18(▽1)	8		2			0(▽1)		8			
	열관리	1	1								열관리	1	1										
	선박기관	1	1								선박기관	1	1										
	운전	9	2		1					6	운전	9	2		1					6			
	조무	3	3								조무	3	3										
	방호	1			1						방호	1			1								
	사무	4	1					1		2	사무	3(▽1)	1					0(▽1)		2			
	9급 소계	18	3				13			2	9급 소계	18	3				13			2			
	전화상담										전화상담												
	기계	3					3				기계	3					3						
	열관리·기계										열관리·기계												
	운전	3	1							2	운전	3	1							2			
	사무										사무												
	조무										조무												
	선박	1	1								선박	1	1										
	방호										방호												
	전기	3	1				2				전기	3	1				2						
	전기·통신										전기·통신												
화공	4					4				화공	4					4							
보건	4					4				보건	4					4							

#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 13조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등) ① 군 본청의 실장·과장 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구인 부읍장·부면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군본청

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통상교통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건설교통과, 녹색환경과를 둔다.

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1. 기획감사실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나.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 군정·비위 감사 및 법무·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라.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마. <개정 2011.1.7.조1930, 삭제 2013. 1.2.조1996>

바. <신설 2008.2.26.조1820, 삭제 2009.6.30.조1868>

#### 2. 주민복지실

가.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의료급여 자격관리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 라. 장애인복지 및 자활 업무에 관한 사항
- 마. 노인복지대책 수립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 바.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 사.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 3. 민원과
- 가.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나. 지적업무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다.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 라.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 4. 행정과
- 가. 정원, 인사, 선거 및 읍면기능전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 나. 공무원단체, 후생, 인구증대시책 추진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
- 다.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5. 문화관광과
- 가. 문화예술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 나. 슬로시티에 관한 사항
- 다. 관광진흥에 관한사항
- 라. 녹색관광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마.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경제수산과
- 가. 지역경제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 나. 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 다.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7. 도시건축과
- 가. 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 다. 디자인에 관한 사항
- 라.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 마.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
- 바.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8. 재무과

- 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 나.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 다. 주택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 라. 세입 및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 마. 국·공유 재산 및 재물관리에 관한 사항

9. 통상교류과

- 가. 농·특산물의 통상유통에 관한 사항
- 나.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자원봉사단체·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하동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0. 산림녹지과

- 가.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 다. 임산물 생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라. 푸른하동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재난관리과

- 가. 민방위, 재난관리 및 120기동대에 관한 사항
- 나.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
- 다. 하천 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설교통과

- 가.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나.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다.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녹색환경과

- 가. 환경보전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나.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 다. 대기, 폐수 배출 시설 관리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
- 라.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여유기구)

제3조의3(한시기구)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한시기구로 남해안개발과를 둔다.

1.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업무 총괄 기획·조정 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 개발 총괄 기획·조정 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 내의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 및 남해안 개발에 따른 배후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 및 남해안 개발 보상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4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장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 영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1에 둔다.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농업인 지원 및 농가경영 안정에 관한 사항
2. 천부농 만부촌 Green하동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교육 및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업지원 및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사항
7.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8.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9. 친환경농업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향토산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2. 과수, 특용작물 산업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

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사업소

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나. 국민체육센터(수영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상하수도 사업소

가. 상수도 사업추진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하수도 사업추진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읍·면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하부행정기구) 읍·면에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행정기구인 부읍장·부면장을 둔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군 본청의 실·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실·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본청

제3조(실·과장의 직급) <개정 2011.1.7.규1053>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주민복지실장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남해안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통상교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재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색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실·과장의 사무분장) 실·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5조(소장의 직급) ① 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 하 동 군 공 보

( 98 ) 제 382 호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 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일반직(보건진료직 또는 간호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소장의 사무분장) 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소장의 직급) 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촌사회과 및 소득지원과를 둔다.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사회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소득지원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9조(과장의 사무분장)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4장 사업소

제10조(소장의 직급) 체육시설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소장의 사무분장) 사업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 제5장 읍·면

제12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부읍·면장 직급 등) 부읍·면장은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하며 총무업무를 겸임한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하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1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0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

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하 동 군 공 보

( 100 ) 제 382 호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3% 이상	13% 이내	4% 이내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9% 이내	31% 이내	26% 이내	6% 이상

※ 비교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1% 이내	34% 이내	30% 이내	25% 이상

※ 비교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1% 이내	89% 이상

※ 비교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34% 이내	66% 이상	-	-	-

※ 비교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농 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15							
<b>정무직 계</b>	1	1						
군수	1	1						
<b>일반직 계</b>	518							
4급	1	1						
4~5급	3	2			1			
5급·지도관	34	12	2	4(3)	1	2(1)	1	12
6급 이하 계	480							
<b>별정직 계</b>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1	1					
<b>연구직 계</b>	2							
연구사	2	-						
<b>지도직 계</b>	25							
지도관	3	-		-				
지도사	25							
<b>기능직 계</b>	66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6조 관련)

관 리 기관별	부서명	구 분		정원 (명)	존속기한	비 고
		직 종	직 급			
계	-	-	-	1	-	-
본청	남해안개발과	일반직	5급	1	2015. 6. 30.	6급 정원 환원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공고 제2013-607호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획허가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3. 9. 24

### 하 동 군 수

####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

- 포 획 목 적 : 유해야생동물 구제
- 포 획 기 간 : 2013. 09. 24 ~ 2013. 10. 30
- 허 가 내 역

허가지역	허가자 (포획자)	포획 방법	포획기간	포획동물 및 수량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일원	배성근	총렵 (자력)	2013. 09. 24 ~ 2013. 10. 30	허가기간 내 까치 200마리 이내

#### ○ 포획제외지역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및 동법 제55조(수렵의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안전수칙)에 해당하는 지역 및 장소
- 군수가 정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장소